

## 예산총칙

제1조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070,000,000	32,100,000
일반회계	633,000,000	18,990,000
일반회계	633,000,000	18,990,000
공기업특별회계	321,300,000	9,639,000
상수도사업특별회계	70,000,000	2,100,000
공영개발특별회계	171,300,000	5,139,000
하수도사업특별회계	80,000,000	2,400,000
기타특별회계	115,700,000	3,471,000
주택사업특별회계	300,000	9,000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5,000,000	150,000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3,600,000	108,000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	1,700,000	51,000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26,000,000	780,000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66,000,000	1,980,000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1,500,000	45,000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1,100,000	33,000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10,500,000	315,000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없다.

제4조 계속비사업은 별첨과 같다.

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과 같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9,588,897천원으로 한다.

제7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55,100,000천원으로 한다.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